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6 제7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0쪽

문학 _____ 97쪽

[4~7] 인문

행위 설명에 대한 이론

지문 평가

각각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두 관점을 구분하여 읽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특이한 구성의 글이다. 하지만 이런 글은 그냥 주어진 대로 읽기만 하면 된다. 편하게 읽고 넘기자.

키워드

인문 - 철학 - 행위의 설명

이유, 행위, 드레이, 합리화해 주는 이유, 설명자, 반박하는 입장, 행위자, 공감의 과정, 김재권, 자기 이해, 투사

문단 1 행위의 설명

- 1) “물을 마시고 싶어 냉장고 문을 열었다.”와 같이, 우리는 흔히 **이유**를 들어 **행위**를 설명한다.

▶ 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은 ‘행위의 이유’를 드는 것이다. 가령 위의 문장에서는 ‘물을 마시고 싶어’가 냉장고 문을 여는 행위의 이유에 해당한다.

- 2)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가졌던 **드레이**는 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은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를 밝혀서 행위자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합리화해 주는 이유**란 행위자가 처했던 상황에서 그 행위를 마땅히 해야만 했던 이유를 말한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드레이’는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를 통해 그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을 중심 소재로 삼아, 앞으로의 내용을 읽어 나가면 되겠다.

문단 2 행위 설명의 주체

- 1) 드레이는 행위 설명이 **설명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는데,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행위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 맥락 짚기 ‘드레이’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를 그에 ‘반박하는 입장’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 관점이 열거되고 있다면 더욱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드레이	반박하는 입장
행위 설명의 주체	설명자	행위자

- 2) 가령 X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본 설명자가 밖이 흐린 것을 보고, “X는 비가 올 것이라 여겨 우산을 챙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해 보자.

◀ 맥락 짚기 행위 설명의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지고 있다. 예시의 각 요소들이 무엇에 대응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자. 여기서 행위 설명이 ‘설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예시는 ‘드레이’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행위 설명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위: 행위자X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선다.
- 설명자의 관점: 행위자X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본다.
- 설명자가 파악한 상황: 밖이 흐리니 비가 올 것 같다.
- 설명자의 행위 설명: X의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는 ‘비가 올 것이라 여겨서’이다.

- 3) 그런데 X가 실제로 처한 상황이 이와는 달라서 친구에게 빌린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우산을 챙긴 것일 수 있고, 그럴 때 설명자가 언급한 행위의 이유는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실제로 ‘X가 처한 상황’과 ‘설명자가 파악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이유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설명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 그 행위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반박하는 입장’의 주장이다(문단2~1).

문단 3 공감의 과정

- 1) 이에 대해 드레이는 **공감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감의 과정**이란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으며, 그에 따라 어떤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설명자**가 재구성해 보는 과정이다.

▶ ‘반박하는 입장’이 지적한 지점에 대한 ‘드레이’의 설명이다.

※ 주목 문단2의 예시에서 실제로 ‘X가 처한 상황’이 ‘설명자가 파악한 상황’과 달랐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드레이는 ‘공감의 과정’을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설명자가 따져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드레이는 이러한 ‘공감의 과정’을 통해 ‘행위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 2) 드레이는 공감의 과정을 통해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에 대한 설명자의 판단이 행위자의 판단과 일치하게 되므로 설명자가 그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설명자가 ‘실제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당연히 행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행위자의 관점’을 취하지 않더라도, 즉 여전히 ‘설명자의 관점’에서도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드레이’의 주장이다.

문단 4 자기 이해 투사

- 1) 그렇다면 제3자인 **설명자**가 행위자의 판단을 제대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

▶ 보다 본질적인 담론이다. ‘공감의 과정’과 관련하여, 애초에 행위자가 아닌 ‘설명자’가 행위자의 판단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행위자의 마음속을 읽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 2) 드레이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수용한 **김재권**은,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참고해 보자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는 보통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려 할 때 그 행위로 이끈 추론 과정을 재구성한다.

▶ 1)에서 제시된 물음에 대한 설명은 ‘드레이’의 관점을 수용한 ‘김재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두 관점은 구분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 김재권은 ‘자기 이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설명자가 아닌 ‘행위자’는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을 그 행위로 이끈 추론 과정을 재구성하게 된다.

- 3) 예컨대 “비 예보가 있으며, 나는 비 맞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만 하는 적절한 행위는 우산을 챙기는 것이다. 따라서 나

는 우산을 챙겨 나간다.”와 같은 추론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자기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예시의 각 요소들이 무엇에 대응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명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행위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 추론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문단4-2].

- 행위자가 처한 상황 : 비 예보가 있으며, ‘행위자’인 나는 비 맞는 것을 싫어한다.
- 추론 과정 : 이런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위는 우산을 챙기는 것이므로, 따라서 나는 우산을 챙겨 나간다.
- 행위 설명 : 나의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는 ‘비가 올 것이라 여겨서’이다.

4) 김재권은 이렇듯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설명자가 자기 이해를 투사하는 과정을 거칠 때 타인의 행위까지 포괄하는 행위 일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 이해를 투사한다는 것은 설명자가 자신이 그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를 상상하여, 그와 같은 행위로 이끈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재구성해 보는 것을 말한다.

➡ ‘김재권’은 행위자와 설명자가 모두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그 행위로 이끌었을 테니, ‘설명자’도 똑같이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로 자신을 이끈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단 5 김재권과 드레이 이론에 대한 평가

1) 김재권의 이론은 자신의 행위나 타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실제의 세부 과정을 잘 기술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드레이의 이론과 함께,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다.

➡ 다만 ‘김재권, 드레이’의 관점은 공통적으로 실제로 그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제기되었던 ‘드레이’에 대한 반박과 맥락을 같이하는 비판이기 때문이다[문단2-4].

2) 그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은 드레이나 김재권이 모두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가 곧 행위를 설명해 주는 이유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떤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이유인데, 그와는 다른 이유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설명자’의 관점에서 ‘어떤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그 밖의 이유로 행위자는 그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3) 학교에 일찍 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를 들은 학생 Y가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갔다고 해 보자. 김재권의 이론에 따르면 학교에 일찍 간 행위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합리화된다. 그런데 Y가 실제로 학교에 일찍 간 것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단짝 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일 수 있다. 어떤 이유가 행위를 합리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있는 그대로 정리하여 이해하자.

설명자의 ‘자기 이해’ 투사

학생 Y는 학교에 일찍 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를 들었다. 내가 Y라면 이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행위는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는 것이다. 따라서 Y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 위해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갔다.

학생 Y의 실제 추론 과정

나는 학교에 일찍 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단짝 친구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단짝 친구를 빨리 보기 위해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갔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갑은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보았고, 잠시 뒤 을이 그 건물의 유리창 하나를 깨는 것을 목격했다. 갑은 유리창을 깬 을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참고로 그 행위로 이끈 을의 상황은 다음의 (가)와 (나), 둘 중 하나에 속하며, 화재 시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은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문제의 발문에 유의하자. ‘그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에 따라 각 사례를 평가해야 하므로, 문단5의 내용을 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 행위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 제시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 설명자인 갑이 판단한 상황은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이며, 을의 행위는 건물의 유리창을 깬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이끈 을의 상황은 (가)와 (나)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유리창을 깬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는 화재 시에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가) 을은 한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보았다. 잠시 뒤 을은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건물의 유리창을 깬다.

➡ (가)에서 을은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본 상황에서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건물의 유리창을 깬다. 즉 상황에 근거해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다. (가)의 경우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가 을이 실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이므로, 갑은 ‘자기 이해’를 투사하면 을의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3) (나) 을은 한 건물의 유리창 안쪽에 놓여 있는 보석을 보았다. 잠시 뒤 을은 그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혼란을 틈타 보석을 훔치기 위해 건물의 유리창을 깬다.

∴ (나)에서 을은 유리창 안쪽에 놓여 있는 보석을 보고 이를 훔치기 위해 유리창을 깬 것이므로,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즉 을은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행위를 한 것이다[문단5-2]. 따라서 갑이 자기 이해를 투사하여 행위 일반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이유]를 찾아도 이를 통해 을의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⑥번 선지는 적절하다.

탄소 나노 튜브

지문 평가

소재 자체는 낯설고 문단2, 3에 복잡한 개념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지만 주어진 정보를 잘 쫓아가기만 하면 요구하는 독해적 판단들은 지극히 전형적이다. 글의 내용에 겁먹지만 않았으면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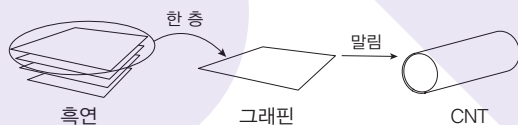
과학 - 화학 - 탄소 나노 튜브

CNT, 그래핀, 흑연, 공유 결합, 오비탈, 결합 오비탈, 반결합 오비탈, 에너지띠, 원자가띠, 전도띠, 락 틈, 반도체, 전기 전도성, 도체, 나선 각도, 원주 벡터, 지그재그형, 안락의자형, 카이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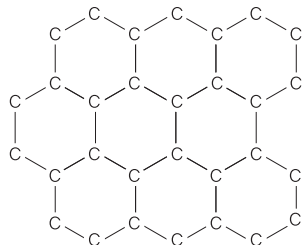
문단 1 CNT와 흑연

- 1) **탄소 나노 튜브(CNT)**는 그래핀이 미세한 직경의 가느스름한 관 형태로 말려 있는 물질이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여섯 개가 꼭짓점을 이루는 육각형 탄소 고리가 벌집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단일 층의 물질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흑연**에서 분리된 한 층을 지칭한다.

☞ 맥락 짚기 글의 중심 소재로서 CNT를 소개하면서, 그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묘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모습을 떠올리거나, 간략하게라도 묘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설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그래핀은 꼭짓점마다 탄소 원자(→ C)들이 위치한 육각형이 평면을 이루며 계속 이어진다. 일부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 2) CNT는 흑연처럼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나 구조적 차이로 인해 강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도체인 흑연과 달리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전기적 특성**을 띤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CNT는 흑연에서 비롯되었으나, 흑연과 달리 '유형에 따라' 그 전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전부 '도체'인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전기적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주목하여 이어지는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2 탄소 원자의 공유 결합

- 1) 그래핀에서 탄소 원자는 이웃하는 세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이렇게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은 ……

▶ 탄소 원자는 모두 육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하나의 탄소 원자는 세 개의 탄소 원자와 이웃한다.

- 2) …… 공유 결합 이전에 개별 원자의 내부에서 전자의 확률 분포 공간인 **오비탈**에 있다가,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분자의 내부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결합 오비탈'과 '반(反)결합 오비탈'이 만들어지면 우선 **에너지 준위**가 낮고 안정적인 **결합 오비탈**에 머문다. **에너지 준위**란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값을 말한다. 이 전자들은 외부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불안정해질 때 **반결합 오비탈**로 전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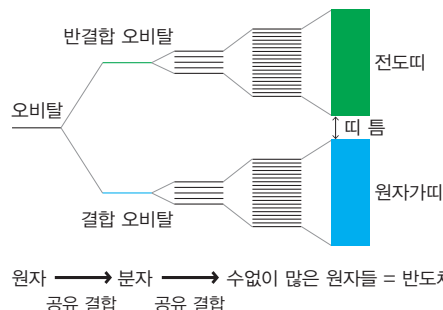
▶ 복잡한 설명이지만, 주어진 서술 그대로 쫓아가자. 공유 결합 이전에 전자는 해당 탄소 원자의 '오비탈'에 존재한다. 그런데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 그로 인해 '결합 오비탈, 반결합 오비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선 '결합 오비탈'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외부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불안정해질 때) '반결합 오비탈'로 전이할 수 있다.

문단 3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 1) 탄소 고리들이 결합되면서 일정 넓이 이상의 그래핀이 만들어지면 결합 오비탈과 반결합 오비탈에는 각각 **에너지 준위들의 집단인 에너지띠**가 형성된다. 결합 오비탈의 에너지띠를 **'원자가띠'**, 반결합 오비탈의 에너지띠를 **'전도띠'**라 하며, 이들 사이에는 에너지 준위가 비어 있어 전자가 위치할 수 없는 **'띠 틈'**이 나타난다. 락 틈이 존재하는 그래핀은 원자가띠의 전자들이 전도띠로 전이하기 위해 락 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하는 **반도체**의 특성을 지닌다.

▶ 원자들이 공유 결합하면 전자는 우선 '결합 오비탈'에 채워졌다[문단2-2]. 따라서 여러 원자가 공유 결합할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합 오비탈'로 이루어진 '원자가띠'에 존재하게 된다.

☞ 주목 '결합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반결합 오비탈'로 전이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문단2-2]. 마찬가지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띠 틈' 이상의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지닌 물질을 가리켜 '반도체'라고 한다.



- 2) 그래핀의 면적이 충분히 넓어지면 두 에너지띠가 겹치면서 락 틈이 사라져 원자가띠의 전자들은 에너지 흡수 없이도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게 된다. 전도띠의 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성질인 **전기 전도성**을 지니는 **도체**가 되는 것이다.

▶ 그래핀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탄소 고리들이 결합한다는 뜻이다[문단3-1]. 그에 따라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의 간극인 '띠 틈'은 점차 좁아지게 되고, 그래핀의 일정 면적 이상에서는 아예 사라진다.

☞ 주목 이렇게 락 틈이 사라지게 되면 '도체'가 된다. 락 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아도[문단3-1],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가리켜 '전기 전도성'이라 한다. 달리 말하면 '반도체'는 '띠 틈'이 있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핀 면적 ↓ ⇒ 띠 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기 전도성을 지님
= 반도체
그래핀 면적 ↑ ⇒ 외부의 에너지 없이도 항상 전기 전도성을 지님
= 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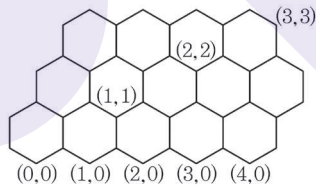
❖ 맥락 짚기 이 부분은 설명의 밀도가 높기도 하지만, 글의 초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CNT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핀이 '흑연'과 달리 도체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문단1-2].

문단 4 CNT 유형과 그 전기적 특성

1) CNT는 직경이 수 나노미터에 불과해서 이를 이루는 그래핀의 면적이 넓지 않고, ……

❖ 주목 중요하다. 애초에 면적을 키우지 않은 그래핀으로 CNT를 만들기 때문에, 앞선 설명과 달리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체'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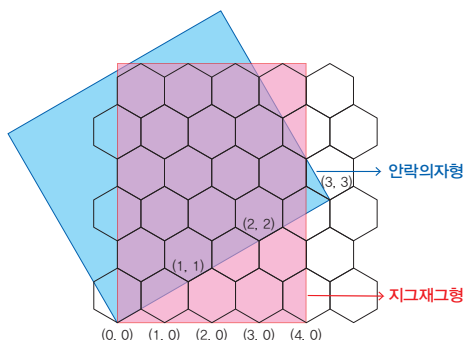
2) …… 전기적 특성이 직경과 나선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핀이 말리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나선 각도**는 탄소 고리의 배열 방향과 튜브 길이 방향의 축에 수직인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직경과 나선 각도는 (n, m) 형태의 **원주 벡터**로 표현된다. 원주 벡터가 (n, m)인 CNT는 <그림>에서 (0, 0) 위치의 탄소 원자가 (n, m) 위치의 탄소 원자와 만나도록 말려 있음을 뜻한다. CNT는 원주 벡터에서 m의 값이 0인 경우 **지그재그형**, n과 m의 값이 동일한 경우 **안락의자형**, 그 외에는 **카이랄형**이라 불린다.



<그림>

❖ 맥락 짚기 CNT의 전기적 특성은 '직경, 나선 각도'에 달렸다. 글의 초점과 직결되는 대목이니 유의하자[문단1-2].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글의 독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경, 나선 각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자.

➡ 아래의 그림과 함께 살펴보자. 만약 원주 벡터가 (4, 0)이라면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사각형의 아래 두 꼭짓점인 (0, 0)과 (4, 0)이 맞닿도록 그래핀이 원통 형태로 말린다. 이때 m의 값이 0이므로 만들어진 CNT는 '지그재그형'이 된다. 반면 원주 벡터가 (3, 3)이라면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사각형의 아래 두 꼭짓점인 (0, 0)과 (3, 3)이 맞닿도록 그래핀이 원통 형태로 말린다. 이때 m과 n의 값이 같으므로 만들어진 CNT는 '안락의자형'이 된다. 그 외의 경우는 '카이랄형'이 된다.



❖ 주목 여기서 '원주 벡터'에 대한 설명은 주어졌지만, 직경에 대한 설명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능동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똑같은 '안락의자형'이라도, 원주 벡터가 (1, 1)이라면 이들은 원주 벡터가 (3, 3)인 CNT보다 사각형의 아래변이 작으므로 '직경'도 작을 것이다. 즉 원주 벡터의 'n, m'의 값이 클수록 CNT의 직경도 커진다.

3) 안락의자형 CNT는 튜브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해 양자 역학적 대칭성을 띠어서 면적이 넓은 그래핀과 같이 도체의 특성을 보이며, 그 밖의 것들[— 지그재그형, 카이랄형]은 반도체의 특성을 보인다.

❖ 맥락 짚기 CNT의 전기적 특성이 '원주 벡터'에 달린 이유다. CNT는 원주 벡터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 '도체, 반도체' 여부가 달라진다. '지그재그형, 카이랄형'의 경우에는 반도체의 특성을 보인다고 했으므로, '띠 틈'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문단3-1].

안락의자형	지그재그형	카이랄형
n=m	m=0	기타
도체	반도체	

4) 연구 결과에 따르면 'n-m'이 3의 배수일 때 띠 틈의 크기가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3의 배수가 아닐 때 직경에 반비례한다. n과 m의 값이 서로 달라도 CNT의 직경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띠 틈이 사라져서 도체가 된다.

❖ 주목 CNT의 '직경'도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똑같이 반도체인 카이랄형과 지그재그형은 직경이 커질수록[→ n과 m이 커질수록] 직경의 제곱에 대해서든 직경에 대해서든 그에 반비례하여 '띠 틈'이 작아지다가, 일정 직경 이상이 되면[→ n과 m이 충분히 커지면] '띠 틈'이 사라져서 '도체'의 특성을 띤다.

- 안락의자형 CNT : n-m=0 ⇒ 띠 틈 × ⇒ 도체
- 지그재그형, 카이랄형 CNT
n-m=3의 배수 ⇒ 띠 틈 ∝ 1/직경² ⇒ 반도체
n-m≠3의 배수 ⇒ 띠 틈 ∝ 1/직경 ⇒ 반도체
일정 직경 이상 ⇒ 띠 틈 × ⇒ 도체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CNT의 제조 과정에서는 보통 여러 유형의 CNT들이 뒤섞이므로,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주로 CNT 혼합물과 **디아조늄염**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분리하는 분리 공정을 사용한다. **디아조늄염과의 반응성**이 클수록 더 많은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밀도가 커지므로, 원심 분리기의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분리 공정의 원리는 'CNT의 유형에 따른 디아조늄염과의 반응성 차이'이다. CNT의 유형에 대한 내용이니 주로 문단4를 참고하면 되겠다.

- 안락의자형 CNT : n-m=0 ⇒ 띠 틈 × ⇒ 도체
- 지그재그형, 카이랄형 CNT
n-m=3의 배수 ⇒ 띠 틈 ∝ 1/직경² ⇒ 반도체
n-m≠3의 배수 ⇒ 띠 틈 ∝ 1/직경 ⇒ 반도체
일정 직경 이상 ⇒ 띠 틈 × ⇒ 도체

디아조늄염과의 반응성 ↑ ⇒ 밀도 ↑ ⇒ 원심 분리기에서의 위치 ↓

2) 도체 CNT가 반도체 CNT보다 디아조늄염과의 반응성이 더 크다. 반도체 CNT의 경우에는 락 틸이 작을수록 디아조늄염과의 반응성이 더 크다.

※ 주목 반도체 CNT의 경우에는 ' 락 틸'이 작을수록, 즉 ' 락 경'이 클수록[문단 4-4] 디아조늄염과의 '반응성'이 커진다. 반면 도체는 락 틸이 아예 없으므로 반도체보다 반응성이 항상 더 커서, 원심 분리기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락 경 ↑ ⇒ 락 틸 ↓ ⇒ 디아조늄염과의 반응성 ↑ ⇒ 밀도 ↑ ⇒ 원심 분리기에서의 위치 ↓

∴ 원주 벡터가 (6, 3)인 CNT와 (9, 3)인 CNT는 모두 'n-m'이 3의 배수이므로 락 틸이 락 경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문단4-4]. 또한 락 경이 작을수록[→ n과 m이 작을수록] 락 틸은 커진다. 즉 (6, 3)인 CNT가 (9, 3)인 CNT보다 락 틸이 더 크므로 디아조늄염과의 반응성은 더 작다. 즉 원심 분리기에서는 (6, 3)인 CNT가 더 위쪽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2~17] 사회 통합

물권의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

지문 평가

(가)에서는 물권의 성질을 채권과 구분하여 설명한다면, (나)에서는 이를 토대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물권의 성질을 채권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정확히 파악해야만 (나)의 설명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키워드

(가) 사회 - 법학 - 물권

재산권, 채권, 물권, 소유권, 용익 물권, 담보 물권, 물권 변동, 물권 행위, 채권자, 채무자, 공시, 등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나) 사회 - 법학 -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 물권적 청구권, 전세금 반환 청구권, 피담보 채권, 용익 기간, 전세금 반환 채권

(가) 문단 1 물권의 유형

1) 물권은 채권과 함께 대표적인 **재산권**에 속한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백락 짚기** '물권'과 '채권'이 열거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재산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 열거되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물권: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음
- 채권: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2) 물권에는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은 물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 있으며, 사용과 수익의 권리만 있는 **용익 물권**이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처분의 권리만 있는 **담보 물권**도 있다.

▶ **백락 짚기** 이번에는 다시 '물권'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을 구분하여 정리하자.

	물건의 사용	물건의 수익	물건의 처분
소유권	○	○	○
용익 물권	○	○	×
담보 물권	×	×	○

▶ 이 중에서 '담보 물권'은 '채권'과 관련이 있는 물권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일단 한 번 더 쟁겨 두자.

▶ **백락 짚기** 특별히 글의 초점이 강조되고는 있지 않지만 재산권 중에서도 물권을 채권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물권'이 '채권'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물권의 여러 유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

(가) 문단 2 물권과 채권의 비교

- 1)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물권 변동**이라 하며,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채권의 경우와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맥락 짚기**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물권 행위'가 채권의 행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권	채권
그 권리의 실현에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음	그 권리의 실현에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함

※ **주목** 문단1-1)에서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여 이해한 바와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실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물권'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를 실현하는 '물권 행위'에 있어서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 2) 또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이는 상대적 권리인 채권이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채권 관계는 해당 계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형성되므로 외부에 그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공시**를 할 필요가 없지만, 물권의 경우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등기** 등의 공시 방법이 필수적이다.

➡ '물권'은 특정한 상대방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권리'다. 반면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 해당 계약을 한 상대방]에게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권리'다.

➡ 애초에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인 '채권'은 그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공시'가 필요 없다. 반면 물권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성립하므로 그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공시'가 필요한 것이다.

☞ **맥락 짚기** 두 개념을 구분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권	채권
그 권리의 실현에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음	그 권리의 실현에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함
절대적 권리	상대적 권리
공시 필요○	공시 필요×

(가) 문단 3 물권과 채권의 관계

- 1) 어떤 물건에 대해 물권과 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적 효력을 지닌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이지만,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건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다. '절대적 권리'인 물권은 '상대적 권리'인 채권에 대해 우선한다.

- 2) 가령 어떤 토지에 소유권이 있는 A가 해당 토지를 빌려서 이용하려는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그러면 B에게 토지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다. 그런데 B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토지

를 이용하고 있는 중에 A가 C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C는 채권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B는 C에게 채권에 따른 요구를 하지 못하고 A에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맥락 짚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으니 각 설명이 예시의 어떤 요소에 대응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A와 B의 임대차 계약: 채권 관계
- 토지 임차권: 채권
-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
- A가 C에게 소유권을 양도해도, B는 C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내세울 수 없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 **주목** '토지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물권인 '소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B는 계약을 체결했던 A에 대해서만 자신의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인 C에게는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A에게 더 이상 임대차를 보장받지 못함을 들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가) 문단 4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대한 예외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의 조항이 영향을 미친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의 채권을 별도로 보호하는 등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법률 지문을 이해할 때에는 '원칙-예외'가 중요하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물권'과 '채권'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문단3-1]].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을 별도로 보호함으로써,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 원칙: 하나의 물건에 대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 예외: 다만 물건이 '주택'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 주택 임차인의 채권]을 별도로 보호한다.

(나) 문단 1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역 물권인 **전세권**은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으로서의 속성도 함께 갖는다.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 물권의 일종인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전세권은 특이하게도 '용역 물권'과 '담보 물권'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즉 담보 물권을 근거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주목** 그런데 이는 특정한 상대방[→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행위[→ 전세금의 반환]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종의 '채권'의 성격

을 갖는다. 동시에 이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즉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나)의 독해에 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가)에서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여 설명했다면, (나)에서는 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우선적 효력'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겠다[(가)의 문단3-1)].

(나) 문단 2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은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갖지만,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여서 채권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 이미 앞선 설명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즉 '채권'의 성격을 갖고, 실제로 채권과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다(→ '물권'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기 때문이다.).

2) 전세권에서 파생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경우에, 애초에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입한 새 소유자에게도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세권 양도 시에 양수인은 새로운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에서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까지 그대로 이전받는다. 즉 채권과 달리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국한된 권리가 아닌 것이다.

▶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문단에서 설명한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것이 어떤 점에서 채권과 '법적 성질'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

※ **주목** 채권은 본래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상대적 권리'를 가졌다[(가)의 문단2-2)]. 그런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기존 소유자가 아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일반적인 채권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 또한 전세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전세권자'도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양도받는다. '새로운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일반적인 채권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문단 3 물권적 청구권과 피담보 채권의 유사성

1) 또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결속되어 있으면서 채권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피담보 채권과 비슷하다. **피담보 채권**은 담보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컨대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을 갖게 될 경우에 해당 금전 채권이 피담보 채권에 해당한다.

☞ **맥락 짚기** 잠시 글의 초점이 전환되어, '피담보 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글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물권적 청구권'에 있으므로, '피담보 채권'과 구분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령 D가 E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E의 물건에 '담보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가)의 문단1-2)]. 즉 E가 금전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 물권'을 통해 해당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이 우선 변제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D의 금전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담보되는 D의 채권을 가리켜 '피담보 채권'이라 한다.

2) 하지만 피담보 채권은 물권 설정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그 발생이 물권의 설정보다 선행하므로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는 아니다.

※ **주목** '피담보 채권'은 그것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 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다. 앞선 예시에서 D의 금전 채권 발생이 E의 담보 물권 설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된다. 즉 '물권으로부터 파생'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과는 구분된다. 다시 말해, '물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라는 점이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이다.

피담보 채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과 결속되어 있으나, 물권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음	물권으로부터 파생됨

(나) 문단 4 용의 물권성이 소멸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1)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로 한 기간인 **용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은 용의 물권성이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 시까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성만 남게 된다.

▶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에 관한 물권인 '용의 물권성'은 사라지고, '담보 물권성'만 남는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만 남는 것이다.

2)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권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다.

☞ **맥락 짚기** 법률 지문을 이해할 때에는 '원칙-예외'가 중요하다. 즉 어떤 요건하에서만 예외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권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분리되어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될 수도 있다.

- 원칙: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함께 양도됨
- 예외: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될 수 있음

(나) 문단 5 전세금 반환 채권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담보 물권성의 전세권과 분리됨으로써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바뀌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잃게 된다. 그 결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행사될 수 있고, 양도 후에 변경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행사될 수 없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는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도 없다.

※ **주목**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 애초에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물권'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세권과 분리되면서, 더 이상 물권과는 관련이 없어졌기에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게 된다.

▶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은 채권의 성질만을 갖게 되고 '상대적 권리'만을 가져 특정한 상대방(→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가)의 문단2-2)]. 또한 여타의 채권과 동일해졌으므로,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전세권'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기> 문단

갑은 을이 소유한 건물 X를 사용, 수익하기로 하고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의 용익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갑은 을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전세금 반환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갑은 병이 보유한 금전 채권의 채무자로서 상환 요구에 직면하자, 병과 합의하여 X와 관련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병에게 양도하였다. 단, 병이 보유한 금전 채권에 대해 담보 물권은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맥락 짚기 지문에서 설명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해당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갑, 을, 병'의 관계에 유의하여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자.

➡ 용익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전세권'은 용익 물권성은 사라지고 담보 물권성만 남는다(나)의 문단4-1). 그에 따라 전세권자인 갑이 부동산 소유자 을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나)의 문단1].

➡ 여기서 갑과 병은 금전 채권의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로, 갑은 병에게 빌린 금전을 상환하고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병에게 양도하였다. 즉 그에 대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나)의 문단4-2)].

∴ 이렇게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되어, 채권의 성질을 갖게 된다(나)의 문단5). 따라서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인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건물 X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②번 선택지는 적절하다.

[18~21] 현대시

(나) 「상행」

- 김광규 -

작품 평가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농촌의 문제를 암시적으로 나타내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도회지 도시민의 무관심하고 속물적인 삶을 꼬집는 작품이다. 화자의 말을 반어적으로 받아들여 하지 말라는 말은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작가가 품은 문제의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막 1 평택을 지나는 상행 열차의 차창으로 보이는 모습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 '차창'에 비치는 '너'의 '낯선 얼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 첫째, 경제 성장이 부여한 도시민의 여유에 젖은, 아무런 비판적 사유도 하지 않는 '너'의 현재 모습이다.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인데,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는 이 작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낯선 얼굴'을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셈이다. 이 말은 자신이 낯설게 변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둘째, 도시민적 삶에 빠져 있는 '너'의 현재를 성찰하는 자아의 모습이다. '흔들리는 차창'에 비친 자신에게서 '문득' 성찰적 자아가 내비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낯선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역시 이 시의 반어적 표현을 감안하면, 그 '낯선 얼굴'을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셈이다. 이는 현재 낯설게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 즉 성찰할 수 있는 본연의 자아를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참고 평택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가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 때 지나치게 되는 곳이다. 그런데 왜 하필 '평택을 지나갈 때'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 이 시가 발표된 1980년대 초에 평택은 농촌의 모습에서 벗어나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곳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택'의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에는 도시화 속에 점점 파멸해져 가는 농촌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다.

토막 2 기차 안 도시민의 모습을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 '차창' 바깥으로 보이는 현실에는 무관심한, 그저 순간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도시민의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낯익은 얼굴들'은 상행 열차에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낯익은 얼굴'이라 한 이유는 또한 그것이 '너' 자신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삶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평택'의 '저녁 들판'에는 새로 지은 양옥들의 '원색'의 지붕들이 석양을 받아 번쩍거리고, 그 양옥들의 지붕에는 당시 급속하게

보급되어 경제 성장을 증언하고 오락적인 문화를 널리 전파했던 'TV 안테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너'는 기차 안에서 심심풀이 가십이나 다루는 '주간지'를 읽고 있다. 화자는 '고개를 끄덕여 다오'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물질문명의 화려함과 유흥을 위해 가볍게 소비되는 문화에 빠져 있는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토막 3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리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 '농약' 때문에 '풀벌레'가 없어지는 것은 환경 문제와 농업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또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어져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의 처지를 환기하기도 한다. '심야 방송'마저 끝난 뒤의 '전파 소리 같은' / '듣기 힘든 소리'는 바로 소외된 이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그것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이지만, 화자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라고 한다. 이 역시 반어적 표현으로 '너'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토막 4 현실의 문제를 가리는 소리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나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새마을 운동을 독려하는 노래였지만 그 시대의 농촌은 수출 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드리운 그늘 아래에서 병들어 가고 있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맥주'와 '콜라'는 모두 경제 성장을 표상하는 소재들이다. 화자는 '너'에게 농촌의 현실에 눈감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경제 성장이 주는 과실들을 누리지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반어적 표현으로 그 이면에는 현실의 사회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토막 5 소시민의 침묵하는 태도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 화자는 현실에 대해 아무런 비판적 사유도 하지 않는, 영혼 없는 '아!'라는 반응과 '침묵'이 표상하는 무관심만 남은 '너'의 삶의 태도를 꼬집고 있다.

토막 6 소소한 집담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가 농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농촌의 진짜 현실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문 날씨'는 남의 나라 축구 경기처럼 별 의미 없는, 어색한 침묵을 잠시 깨기 위한 심심풀이의 대화 소재일 뿐이다. '너'가 관심 있는 것은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일 것이다. 화자는 그러한 '너'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너를 위하여'는 것일지,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하는 것일지 묻고 있다.

▶ '너'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그리고 나를 위하여'라는 구절에서 '나'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너'의 모습은 곧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모습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반성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감

— 수록 지문 평가

사대부의 유배 가사이지만 「만분가」나 「사미인곡」 같은 작품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작가는 관직에 오른 적도 없고, 스스로 무슨 일을 해서 유배에 처한 것도 아니다. 단지 당쟁의 와중에 이미 25년 전에 죽은 큰아버지의 죄가 거론되면서 그의 조카라는 이유로 함경도 갑산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으니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항변할 이유가 없고, 임금을 곁에서 모신 적이 없으니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말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 보니 유배 중에 느끼는 괴로움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강조할 뿐이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사면의 성은(聖恩)이 내려지기를 간청할 명목이 그것뿐이었던 셈이기도 하다.

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빌려 상시(常時)과저(= 현실로 삼고 싶네)

→ 매일 밤마다 꿈에 [어머니를] 뵈니, 그 꿈을 현실로 바꾸고 싶네

➡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꿈에서 매일 어머니를 본다 해도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으니 그 꿈을 현실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를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학발 자안(鶴髮慈顏, 흰머리의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못 뵈거든

안죽 서신(雁足書信, 기러기 발목에 매어 보내는 편지) 잣았으면

➡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실제로 만날 수는 없으니, 어머니의 소식이라도 자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참고 그리운 사람의 소식을 '안죽 서신', 즉 기러기가 전해 주는 소식이라고 표현했다. 「적성외전」 같은 고전 소설에 나오는 기러기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한 달 넘네

➡ 편지가 유배지까지 오는 데 한 달이 넘는다는 것은, 어쨌거나 실제로 소식을 주고받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작가는 집에서 부리는 종을 시켜서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못 볼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 편지가 안 올 때에는 기다리게 되지만, 편지를 받아서 읽을들 시원하겠느냐는 물음이다. 설악적인 표현으로, 편지를 읽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기분이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고 안타깝다는 것이다.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천산만수(千山萬水) 막힌 길에 일반 고사(一般苦思, 모든 괴로운 생각들) 뉘가 알꼬

➡ 고향 가는 길은 막혀 있고, 마음은 괴롭다는 것이다.

문노라 밝은 달아 양쪽 땅에 비추느냐

➡ 달에게 자신이 있는 유배지와 어머니가 있는 고향 땅, 양쪽을 다 비추고 있느냐고 묻는다. 달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고향 땅에 계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르고 싶다 뜨는 구름 남천(南天, 남쪽 하늘)으로 달리는구나

➡ 남쪽 하늘로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을 따라 남쪽 고향 땅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것이다.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 앞에 가 노닐고저

➡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다.

내 마음 헤아리니 노친 마음 일러 무삼

→ 내 마음 생각해 보니 늙으신 어머니 마음은 일러 무엇 하리.

➡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늙으신 어머니의 마음은 말해 무엇 하겠느냐는 것이다.

여의주 잃은 용이요 키(=배의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없는 배 아닌가

➡ 어머니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외아들인 자신을 '여의주'와 '키'에, 아들을 유배지에 떠나보낸 어머니의 처지를 ['여의주' 잃은] '용'과 ['키' 없는] '배'에 빗대고 있다.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실꼬

➡ '머무실꼬'라는 높임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추풍의 낙엽'은 의지할 데 없는 어머니의 처지를 빗댄 시어이다.

(중략)

외로운 한(恨) 던져두고 노친 사정 오죽할까

➡ 자신의 정신적 고통보다 늙으신 어머니의 형편이 어떨까 하는 걱정을 앞서우고 있다.

이렇게 떠날 테면 형제나 두었든가

→ [유배로 인해] 이렇게 [어머니 곁을] 떠날 것이었으면 형제나 두었든가

형제가 없거든 자손이나 있었든가

➡ 자신이 외아들인 데다가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유배에 처하여 늙은 모친이 의탁할 사람 없이 자내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독자(獨子, 외아들)가 자손 없어 모실 사람 의탁 없이

→ 홀몸으로 자손 없어 [어머니를] 모실 사람, [어머니가] 기댈 데도 없이

무한한 애만 씹워 불효도 막대하다

→ 무한한 애만 쓰이게 하여 불효도 막대하다

➡ 곁에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 자책하고 애태운다.

자탄 신세 하릴없어 차라리 잇자 하되

한을 낳는 솜은 정(情)이 끝끝마다 절로 나니

→ 한을 만들어 내며 솜아난 정화가 끝끝마다 절로 나니

➡ 이렇게 한탄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걱정을 잊고 싶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솜아나 끝없이 한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긴긴 낮 깊은 밤에 천리 상사(千里相思) 한결같이

➡ 멀리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낮이건 밤이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도 열두 때요 한 달도 서른 날에

날 보내고 달 지내어 하마(= 별새) 거의 반년일세

이러구러 해포(= 한 해가 조금 넘는 시간) 되면 사나 마나 무엇 할꼬

➡ 이제 반년 가까이 지난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유배 기간이 길어지면 의지할 데 없는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니, 한 해를 넘기고 나면 유배에서 풀려나도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유배를 풀어달라는 말이다.

고락(苦樂)이 순환하니 어느 날에 돌아갈꼬

사면(赦免) 조서 내려오면 웃음 웃고 이 말 하리

➡ 언젠가 사면령이 내려오는 날이 되면 지금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날을 상상하며 위안을 얻고 싶은 것이겠다.

아마도 우리 성군 효리(孝理, 효를 근본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림)하에 명춘(明春, 내년 봄) 은혜 미치소서

→ 아마도 우리 어진 임금께서 통치의 근본으로 삼으시는 효도의 도리에 따라 내년 봄 [사면의] 은혜 미치게 하소서.

➡ 효도를 중시하는 어진 임금이 내년 봄에는 사면령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